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5.28.(목) 10:00	배포	2026.5.28.(목)		
담당부서	은행리스크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	책임자	팀 장	이훈아	(02-3145-8352)
		담당자	조사역	이유진	(02-3145-8355)

제 목 : 홍길동이 단체이름이라구요?

개인명의를 사칭한 “삼행시 단체통장”에 유의하세요!

■ 소비자경보 2026-15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주요 내용

◆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*로 임의단체명을 짓고 동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(일명 “삼행시 단체통장”)를 개설하는 사례가 있으며,

* (예)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 → 단체명: 홍길동

○ 이와 같이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.

○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하여 단체 계좌를 만들고, 이 계좌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*이 발생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.

* 임차인은 계좌주명이 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과 동일하므로 의심없이 전세보증금을 송금

⇒ 이에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 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(주의)를 발령합니다.

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● 홍길동[단체 계좌주]이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[정당한 송금상대방]이 아닐 수 있으며,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
➡ 거래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거래상대방 계좌명 옆에 “(단체)”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이므로 송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I

발령 배경

- 금융회사는 「금융실명법」(§3)에 따라 ‘실지명의’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,
 -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상의 성명으로,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(예: 동창회, 친목회 등)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, 개인의 이름을 딴 삼행시*로 단체명을 짓고 동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(일명 “삼행시 단체통장”)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며,
 - * (예)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 → 단체명: **홍길동**
 - 이와 같이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의 계좌는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.
-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하여 임의단체를 만들고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*이 발생하였습니다.
 - * 임차인은 계좌주명이 계약서 상의 임대인 성명과 동일하므로 의심없이 전세보증금을 송금

※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사례

-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고, **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**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**임차인들의 전세금(약 8억원)**을 송금받아 가로챈



⇒ 이에 금융감독원은 **삼행시 단체통장**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전파하는 소비자경보(주의)를 발령합니다.

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홍길동(단체 계좌주)이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(정당한 송금상대방)이 아닐 수 있으며,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
- **삼행시 단체통장**을 악용한 금융범죄는 거래상대방 확인 등 금융 소비자의 일반적인 예방노력만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.
- 개인성명으로 오인가능한 단체명을 가진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시 금융회사가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였으며,
- 「금융실명법」 유권해석(금융위)*을 바탕으로 앞으로 금융권**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“(단체)” 음절을 부기하여 송금 시 계좌주명에 “(단체)”가 표기되도록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.

*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(260094): 거래자의 실지명의 외의 부기사항은 「금융실명법」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와 무관

** 은행권은 6월 중 시행 계획이며, 중소금융권은 9월 이전 시행할 예정

- **단체 계좌주명 표기방식 개선***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 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, 금융거래 시 **정당한 거래상대방 확인**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* (예시) 계좌주명 표시: 홍길동 → 홍길동(단체)

▶ 송금(특히, 전세보증금 등 거액송금)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**거래상대방이 개인**임에도 **거래상대방의 계좌명 옆에 “(단체)”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면**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이므로 **송금에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III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가 금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금융범죄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